

의안번호	2207319
의 퇴 인	김상훈 의원
회 답 일	2025. 3. 5.
추계번호	25A0157

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2조의4 (명문장수기업의 요건)	명문장수기업은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1.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. 이 경우 <u>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기업은 주된 업종의 변동 없는 것으로 봄</u>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2조의4(명문장수기업의 요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의 지정 대상 업종을 일반 유흥·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,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의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정 대상이 확대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은 장기간(45년이상) 운영되는 중소·중견기업이며, 명문장수기업 현황은 [표1]과 같음

[표1] 명문장수기업 수 현황

(단위: 개사)

구분	2022	2023	2024
명문장수기업 수	37	43	53
신규	7	6	10
탈락	83	43	72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

- 중소벤처기업부는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 사업으로 확인서 수여식, 현판 제작, 영상·언론 등 홍보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음

[표2]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	2023결산	2024결산	2025예산안
확인서 수여식	17.1	28.5	18
현판 제작	11.5	22.4	12
영상·언론 등 홍보	171	186	170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 제외되는 일반 유흥주점업 등의 업종 현황을 파악해야 하나, 관련 통계 자료의 미비로 한계가 있음
 -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, 현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기본통계는 기업체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 이상만 업종 현황 추출이 가능함
 - － 일반유흥주점업 등(사행성 업종 포함)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로서 해당 업종의 현황에 대한 자료가 미비함¹⁾
 - 주된 업종에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의 업종변동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도 관련 자료의 미비로 추계가 곤란함

1) 중분류 기준을 사용할 경우 일반유흥주점업은 음식·주점업이며, 명문장수기업 요건 완화 시 중분류 기준 사용시 음식점 등 개정안에 제시된 외의 다른 업종도 함께 제외됨

[표3] 명문장수기업 요건의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

구분	현행	개정안
업종	·건설업, 부동산업,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제외	·일반 유흥주점업 등 제외
업종변동 요건	주된 업종의 변동없이 계속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은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%미만인 경우 업종변동이 없는 것으로 봄	주된 업종의 변동없이 계속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은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80%미만인 경우 업종변동이 없는 것으로 봄

-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,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작성자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서영빈	권아영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서영빈	02-6788-4653	ybin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1]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개요 및 기업 혜택 현황

□ 개요 및 경과

- (목적)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,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
- (개념) 장기간(45년 이상)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,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·중견기업
- (추진경과) ‘명문장수기업 육성방안’ 수립(’14.9) → 법적 근거 마련(’16.9) → 최초 확인(6개사, ’17.2) → 중견기업으로 확대(’17.6) → 2~9차 확인(’18~’24)

□ 확인기준 및 현황

- (확인 기준) 경제적·사회적 기여 지표 등으로 평가하여, 평가점수 80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심의위원회에서 평가점수·평판검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확인
- (확인 절차)



* 관리기관 : 중소기업중앙회(중소기업), 한국중견기업연합회(중견기업)

- (확인 현황) 53개사 * 중소기업 38개사, 중견기업 15개사

회차	1회 (’17)	2회 (’18)	3회 (’19)	4회 (’19)	5회 (’20)	6회 (’21)	7회 (’22)	8회 (’23)	9회 (’24)	합계
기업수	6	4	2	2	5	11	7	6	10	53

□ 혜택 내용

- 명문장수기업 현판 제공
-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(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홍보에 활용)
- 언론 기획기사, 기업홍보영상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
- 인력·수출·자금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우대